

## 2023년 제1차 경기도 공공버스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제2호,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침」에 따라 '2023년 제1차 경기도 공공버스 운송사업' 18개 입찰단위에 대한 '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9일  
경기교통공사 사장

###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2023년 제1차 경기도 공공버스 운송사업

나. 사업대상 : 18개 입찰단위(18개 노선 / 120대)

- 입찰단위 및 노선별 운행계획은 <붙임1> 참조

다. 면허기간 : 5년 +  $\alpha$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면허 연장여부 결정, 1회에 한함)

※ 대상노선이 국가사무화 되는 시점에 따라(직좌형 시내버스 국가사무 전환) 면허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라. 운행개시일 : 2023년 10월 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2. 사업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신청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 법인 및 법인설립 예정인 자 또는 개인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한정면허가 가능한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나. 신청방법

- 1) 사업신청은 “2023년 제1차 경기도 공공버스 운송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업신청자' 대표 명의로 '제안서'를 제출
- 2) '제안서'는 경기교통공사(광역버스준공영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은 반드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별지양식>에 따라 작성
- 3) '사업신청자'가 2개 이상의 입찰단위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 입찰단위별로 '제안서'를 각각 제출

## 3. 사업설명회

- 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23. 8. 10. 경기교통공사 홈페이지(<https://www.gtrans.or.kr>)에 사업설명 자료를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함.
- 나. 경기교통공사 홈페이지(<https://www.gtrans.or.kr>)에 게시되어 있는 사업설명 자료를 반드시 숙지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설명 자료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음.

## 4. 제안요청서 작성 관련 Q&A

- 가. '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함.
- 1) 질문방법 : 문의사항은 반드시 경기교통공사(광역버스준공영팀)로 서면 또는 전자우편(E-mail:leevic95@gtrans.or.kr)으로 제출하여야 함.
  - 2) 질문접수 : '23. 8. 9.(수) ~ 8. 24.(목) 17시00분 까지
  - 3) 답변방법 :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접수일 익일 17시까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및 경기교통공사 홈페이지(<https://www.gtrans.or.kr>)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하며, 질문기간이외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음.
  - 4) 4) 답변기간 : '23. 8. 10.(목) ~ 8. 25.(금) ※휴일 제외
- 나. '제안서' 작성 질문에 대한 공개된 답변내용은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로서 모든 '사업신청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가짐.

## 5. 제안서 접수

가. 제안서 접수일 : '23. 8. 25.(금) 16시 까지

나. 접수장소 : 경기교통공사(광역버스준공영팀), 양주시 옥정로6길 18 한길플라자II 3층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6. 사업자 선정절차 및 방법

가. 선정 및 운영 절차 : ①제안서 접수 및 평가 → ②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③협상 및 이행협약 체결 → ④한정면허 발급 및 운영준비 → ⑤운영 개시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일: '23. 9. 4(월) ~ 9. 5(화) 예정

다. 입찰단위별로 '사업신청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 없이 1개 '제안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함.

라. 선정방법

- 1) '제안서'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80점), 입찰가격 평가(20점) 및 가점, 감점 평가를 실시하여 합산점수로 평가
-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을 받은 업체 중에서 최고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3)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진행

마. 협상대상자 순위 통보 : 경기교통공사 홈페이지 공고 '23. 9. 8(금).(16:00 이후)

## 7. 제출서류

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

- 1) 입찰참가서류 1부
- 2)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내역서 1부(밀봉하여 별도 제출)
- 3) 정량평가 제안서 1부
- 4) 정성평가 제안서 8부(원본1부, 사본 7부)
- 5) 전자파일 (USB) 1개

나. 기타 '사업신청자'의 추가 제안을 위해 제출이 필요한 서류

## 8. 본 사업의 특수조건

- 가. 참가하려는 입찰단위에 「경기도 공공버스 전환노선 운행 중 차량 양도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는 경우,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협약서에 명시된 차량을 반드시 양수하여야 하고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
- 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협상과정에서 본 사업의 특수조건(‘8-가’)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협상을 결렬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즉시 협상을 개시함.
- 다. 입찰단위에 포함된 각 노선별 운행대수는 공고된 인가대수 이내에서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함.
- 라. '사업신청자'는 해당 입찰단위에 대하여 1개의 '금액산출내역서'와 1개의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 1) 가격제안서('제안금액'), 금액산출내역서는 1일, 버스 1대 기준으로 제시하며, 봉인부분 날인 후 밀봉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함.
  - 2) '제안금액'이 본 제안요청서의 입찰단위별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 ※ 입찰단위에 포함된 각 노선의 운행횟수를 조정하더라도 '제안금액'은 '기초금액'을 토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향후 협상과정에서 운행횟수 변경에 따른 영향을 반영함.
  - 3) 해당 입찰단위에 대하여 공고된 '항목별 기초금액' 이하로 '항목별 제안금액'을 산정하여 '금액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함.
  - 4) '항목별 제안금액'을 합산하여 입찰가격평가를 위한 '제안금액'을 산정하며, <별지6. 가격제안서>를 작성함.
  - 5) 입찰단위에 포함된 각 사업노선의 협상금액은 해당 입찰단위의 '항목별 기초금액'에 대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항목별 제안금액'의 비율을 각 사업노선의 '노선의 항목별 기초금액'에 적용하여 산정함.
  -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본 노선의 인·면허권자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변경되는 경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운수사업자와 협의하여 본 노선의 면허조건과 협약서 등을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면허조건과 협약서 등의 조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음.

## 9. 기타

-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있는 경우 '운송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나. '사업신청자'는 공고 내용과 관련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다. 기타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는 사업설명 자료와 공개 답변 내용을 확인한 후, 경기교통공사(광역버스준공영팀, 031-860-1565)로 문의바람.

붙임 : 1. 2023년 제1차 경기도 공공버스 입찰단위 및 노선별 사업계획 1부  
2. 2023년 제1차 경기도 공공버스 운송사업 제안요청서 1부  
3. 2023년 제1차 경기도 공공버스 세부사업계획 입찰단위별 각 1부. 끝.